

대법원 2019. 4. 11 선고 2018다4689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9. 4. 11 선고 2018다4689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9 선고 2018나4518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19 선고 2017가소496437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

피고, 상고인 주식회사 B

판결 선고 2019. 4. 11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나45185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를 살펴본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조희대

대법관김재형

주심대법관민유숙

대법관이동원